

고등교육법 제27조2에 따른

「2026 대학 안전 관리 계획」

[서울캠퍼스]



2026. 3.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지원처
안전보건관리팀**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I.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 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분하는 등 재난안전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를 특별히 배려한다.
- I.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I.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 I.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과 인식개선으로 안전 캠퍼스 구현

안전·보건 경영방침

1. 대학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발전시켜 산업 재해를 예방한다.
2. 교내 구성원과 도급·위탁업체 모든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
3. 유해·위험요인의 조기 파악과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한다.
4. 구성원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5.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문화를 정착한다.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7
1. 재난	7
① 자연재난	7
② 사회재난	11
2. 안전사고	16
① 학생 안전사고	16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22
③ 연구실사고	25
3. 감염병 확산	28
① 호흡기감염병 일반	28
4. 범죄	32
① 일반범죄	32
② 성범죄	37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41
① 산업재해	41
② 중대재해	48
6. 기타	52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52

목 차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54
Ⅳ.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7
Ⅴ.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68
Ⅵ.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2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학생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비상사태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법정 총괄 재난안전부서 (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전 화	02-2173-2001	FAX	홈페이지 www.hufs.ac.kr
총 장	강기훈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윤승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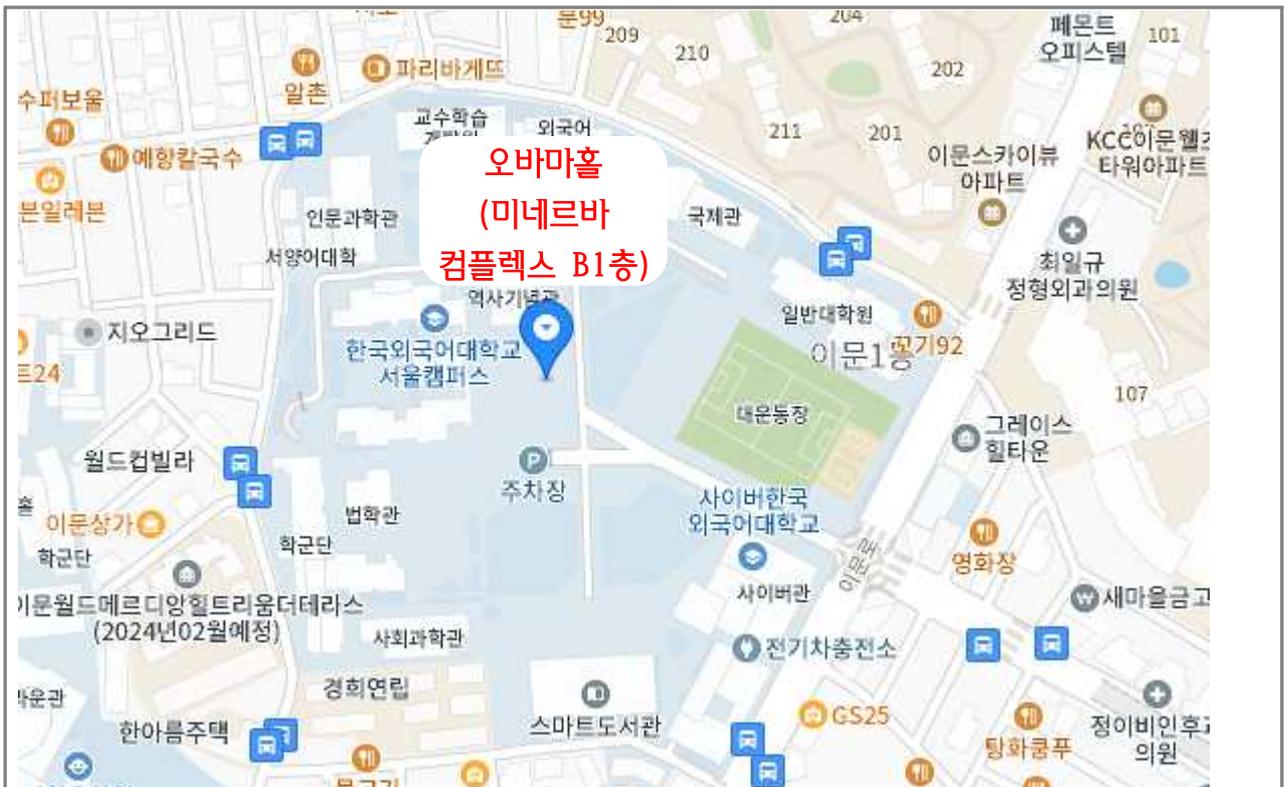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13,010	2,778	402	85	16,275	재적생

교직원 (명)	전임교원		직원	합계
	357		246	603

(* 2025년 통계연보 반영)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② 조직체계 현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 총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총괄 안전관리책임자(관)와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안전관리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대학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 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소관기관별 직제규정 중심으로 안전 관련 주요 임무·기능 기재
- 담당부서현황 및 비상연락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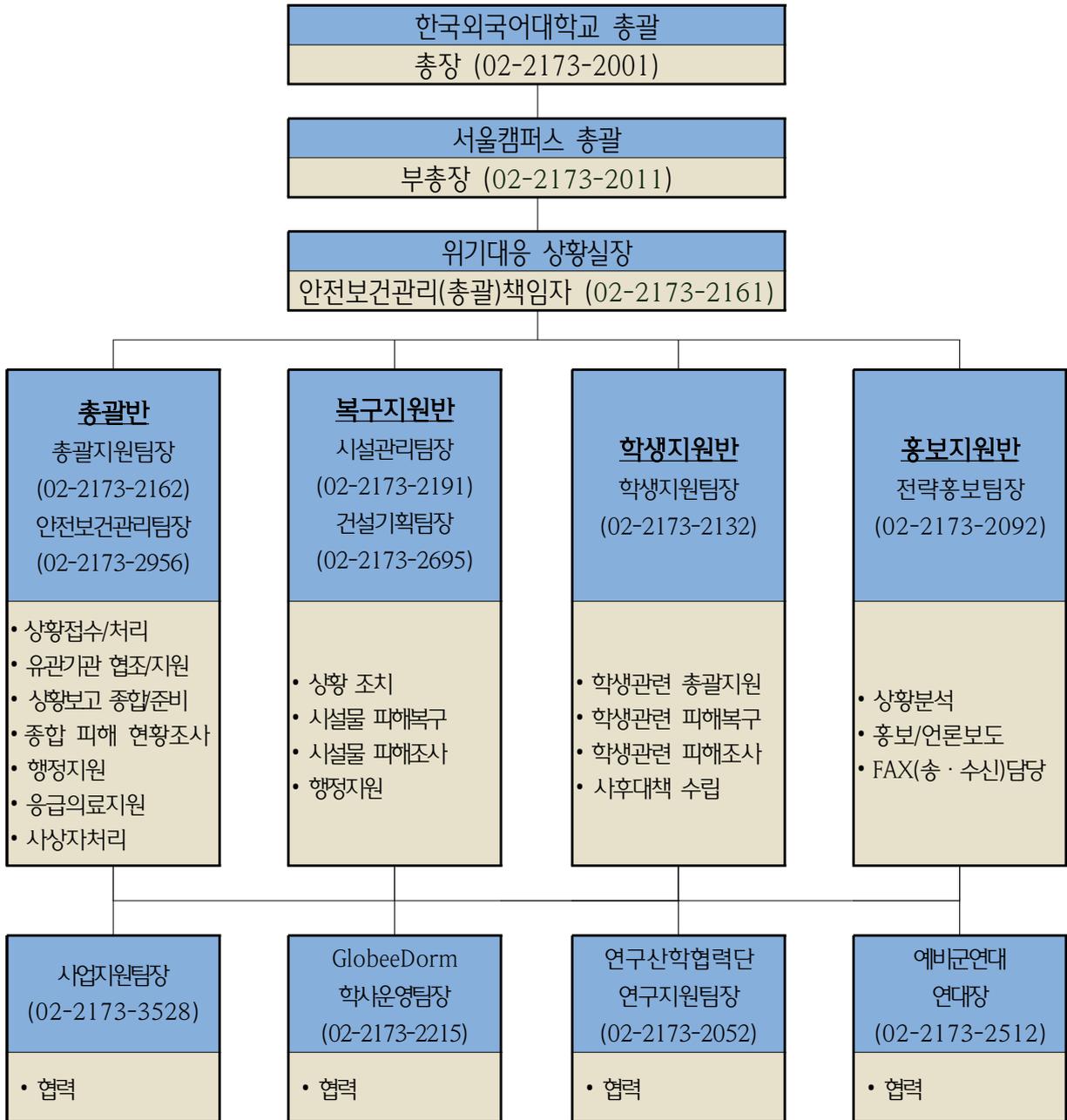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보건관리팀	전 행정부서
1. 재난	자연재난	시설관리팀	총괄지원팀, 건설기획팀
	사회재난	시설관리팀	총괄지원팀, 건설기획팀
2. 안전사고	학생 안전사고	학생지원팀	총괄지원팀, 안전보건관리팀, 학사종합지원센터
	교육시설 안전사고	시설관리팀(교내시설 주관), 건설기획팀(주변시설 주관)	
	연구실사고	시설관리팀	
3. 감염병	호흡기감염병 일반	안전보건관리팀	총괄지원팀
4. 범죄	일반범죄	총괄지원팀	인사팀
	성범죄	인권센터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팀	인사팀, 총괄지원팀, 시설관리팀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팀	인사팀, 총괄지원팀, 시설관리팀
6. 기타	비상사태	예비군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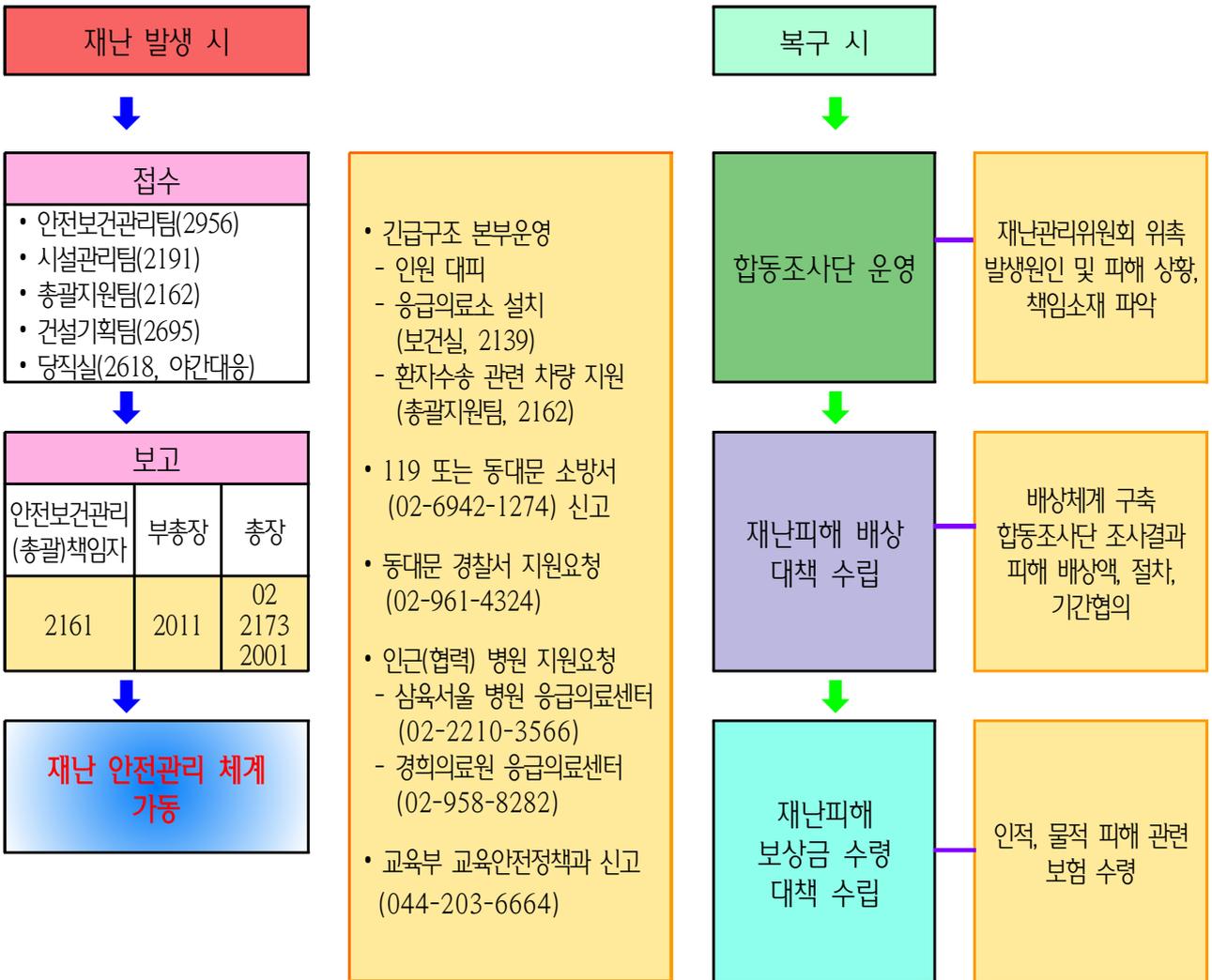
□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책	성명	집무실 전화
총장실	총장	강기훈	02-2173-2001
부총장실	부총장	전학선	02-2173-2011
행정지원처	처장	윤승영	02-2173-2161
교무처	처장	홍종명	02-2173-2101
학생·인재개발처	처장	신근혜	02-2173-2131

□ 재난 안전관리체계



□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 전화번호: 02-2173-(내선번호)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시설관리팀	팀장	김선규	02-2173-2191 / sunkyu@hufs.ac.kr	주관부서
2	시설관리팀	팀원	황병륵	02-2173-2120 / sperd1@hufs.ac.kr	
3	총괄지원팀	팀장	이명우	02-2173-2162 / bright@hufs.ac.kr	협조부서
4	건설기획팀	팀장	김지호	02-2173-2695 / jhkim120@hufs.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 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2	0	0	0	0.4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0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 2022년 6월 누적강수량 약 228mm의 집중호우 발생, 도서관 벽체 누수 및 사회관 옆쪽 지반침하로 인한 싱크홀 발생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

- 비상연락망 및 비상 근무체계 수시 점검.
- 건물 내 피난안내도 부착
- 구성원들에게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사전 숙지(학교홈페이지, 이메일등)
- 건물 내 취약시설 수시점검 및 보수

○ **자연재난 예보 발생시**

- 학교 및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 점검
-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체제 돌입, 취약시설 순찰 및 점검
- 단전상황을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점검
- 침수상황을 대비하여 양수기(6대) 점검 및 모래주머니등 준비.
- 태풍피해에 대비하여 수목 지지대 설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고정작업 시행
- 대설피해에 대비하여 제설장비(제설차량등) 및 제설용품(염화칼슘, 모래등) 상태점검
- 지진피해에 대비하여 폭발 및 화재방지를 위한 가스 및 전기시설에 대한 차단방법 숙지
- 건물 내,외벽의 균열등 파손여부 점검.

○ **자연재난 발생시 대응**

- 건물 내 침수, 붕괴등 위험발생 예상시 가스 및 전기시설 차단
- 구성원 대피안내방송 실시 및 안전한 대피 유도.
- 위험시설물(붕괴, 침수등) 접근금지표시 등 안전조치 시행
- 부상자 발생시 응급조치 및 119 연락(무리한 응급조치 자제)
- 교내.외 주변 위험상황 파악 후 임시 휴강조치등 학사조치 결정.

○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 인명 및 시설 피해현황 파악 내부보고 및 보고
- 피해시설 및 피해예상 시설물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시설 복구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

구분		성명	연락처	비고
내부	행정지원처장	윤승영	02-2173-2161	
	시설관리팀장	김선규	02-2173-2191	
	시설관리팀-소방	김재환	02-2173-2196	
	시설관리팀-기계	황병륵	02-2173-2120	
	시설관리팀-전기	김재환	02-2173-2196	
	건설기획팀장	김지호	02-2173-2695	
	총괄지원팀장	이명우	02-2173-2162	
	안전보건관리팀장	홍순혁	02-2173-2956	
	보건실	김혜정	02-2173-2139	
	외대어연	유홍립	02-6235-2879	글로벌홀
	외대어연	박택순	02-6235-2863	글로벌홀
	외대어연	엄미애	02-6235-2868	글로벌홀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건물 유지보수 사업	70	122	741	933	
대형수목 유지관리사업	6	18	70	94	
계	76	140	811	1,027	

②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시설관리팀	팀장	김선규	02-2173-2191 / sunkyu@hufs.ac.kr	주관부서
2	시설관리팀	팀원	진호일	02-2173-2192 / skyhoil@hufs.ac.kr	
3	총괄지원팀	팀장	이명우	02-2173-2162 / bright@hufs.ac.kr	협조부서
4	건설기획팀	팀장	김지호	02-2173-2695 / jhkim120@hufs.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1	0	0.2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2024년 5월 국제학사 여자기숙사 보조배터리 화재 (발생경위) 충전 중이던 보조배터리가 폭발하여 의자 및 옷에 떨어지며 화재발생. 학생이 신속하게 식수로 즉시 화재진압 완료 (원인분석) 과충전 및 KC미인증 보조배터리 사용으로 인한 폭발로 추측.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

- 건물 내 피난안내도 부착
- 매일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상태 점검 관리
- 노후 소화기 교체
- 연 2회 소방시설 전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및 보완공사 시행
- 연 2회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시행
- (보조배터리 화재예방)
외출시 보조배터리 충전 지양 및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문 배부
- 연 2회 석면건물 대상 유해성 평가 실시(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 노후교육시설(준공 40년이상)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시행(최초 1회)
- 시설물안전법 2종 대상건물 정기안전점검(연2회) 및 정밀안전점검 시행(1회/3년)
- 특수구조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시행(1회/3년)

○ 사회재난 발생시 대응 <재난(화재, 건물붕괴등) 발생>

- 자동화재탐지장치 작동 또는 최초발견자 경보장치 작동 후 소방기관(119) 신고
- 비상방송설비(방송설비 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재난사실 전파
- 화재 발생위치 및 인명피해 및 물적피해 발생가능성 신속 파악 후 보고
-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실시(지휘통제, 초기소화, 방호안전 등)
- 가스설비 차단 및 유관기관 통보(한국전력 동대문중랑지사, 예스코)
- 소방서 현장도착 후 지시따르며 협조.

○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 피해현황 파악 내부보고 및 교육부 보고
- 피해시설 및 피해예상 시설물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피해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자위소방대 편성현황

구분	소속	성명	개별임무	내선
지휘통제	시설관리팀	황병륵	대원지휘	02-2173-2120
	시설관리팀	표영환	현장통제	02-2173-2200
비상연락	시설관리팀	윤정옥	비상연락	02-2173-2198
초기소화	시설관리팀	박정수	초기진화	02-2173-2197
	시설관리팀	이진범	초기진화	02-2173-2195
	시설관리팀	서민철	초기진화	02-2173-2198
피난유도	시설관리팀	함용철	피난대피	02-2173-2195
	시설관리팀	이원주	피난대피	02-2173-2898
응급구조	시설관리팀	진호일	응급환자 후송	02-2173-2192
	시설관리팀	김재환	응급환자 후송	02-2173-2196
방호안전	시설관리팀	김현주	방호시설 관리	02-2173-2193
	시설관리팀	박병두	방호시설 관리	02-2173-2679

□ 비상연락망

	구분	성명	연락처	비고
내부	소방안전관리자	김선규	02-2173-2191	본교
	소방안전관리자	김재환	02-2173-2192	제2연구동
	소방안전관리자	윤정옥	02-2173-2198	제2연구동
	시설관리팀-기계	황병록	02-2173-2120	
	시설관리팀-전기	함용철	02-2173-2195	
	행정지원처장	윤승영	02-2173-2161	
	건설기획팀장	김지호	02-2173-2695	
	총괄지원팀장	이명우	02-2173-2162	
	안전보건관리팀장	홍순혁	02-2173-2956	
	보건실	김혜정	02-2173-2139	
	외대어연	유홍립	02-6235-2879	글로벌홀
	외대어연	박택순	02-6235-2863	글로벌홀
	외대어연	엄미애	02-6235-2868	글로벌홀
긴급 대응 기관	동대문소방서	-	119	화재,진압,구조
	서울삼육병원	-	1577-3675	응급대응기관
	동대문구청	-	02-2127-5000	재난관리기관
	동대문경찰서	-	02-961-8738	치안/통제
협력 기관	에스코	가스	1544-3131	
	한국전력	전기	02-970-4265(동대문중앙지사)	
	서울시 상하수도	수도	02-3146-2600(동부수도사업소)	
	명신화이어이엔지	소방	02-406-3119(김종석)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1577-0603	
	오티스엘리베이터	승강기	02-1661-6112	
보고기관	교육부	학교안전 총괄과	044-203-6355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건물 안전점검	4	10	8	22	
피난시설 점검 및 보수	1	1	1	3	
소방시설 점검보수	72	79	70	221	
미세먼지	34	33	36	103	
계	111	123	115	349	

2. 안전사고

① 학생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학생지원팀	팀장	권윤기	02-2173-2132, steve@hufs.ac.kr	주관부서
2	학생지원팀	담당	박도윤	02-2173-2133, doy@hufs.ac.kr	
3	총괄지원팀	팀장	이명우	02-2173-2162, bright@hufs.ac.kr	협조부서
4	안전보건관리팀	팀장	홍순혁	02-2173-2956, safety@hufs.ac.kr	
5	학사종합지원센터	팀장	김현숙	02-2173-2107, wisssue@hufs.ac.kr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1	3	11	17	14	9.20
재산피해(백만원)	2	6	12	10	19	9.8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1	3	11	17	9.20
	계	1	3	11	17	9.20

□ 원인분석

- 학생사고경위조사위원회 결과
 - 실험실습비 집행체계 개선 및 체육실기 수업 기말고사 및 계절학기 권고
- 사고 원인 분석
 - 운동사고 : 82%, 시설물사고 : 6%, 기타(개인 부주의 등) : 12%
 - 대부분 체육대회를 비롯한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행사주최측 안전교육 실시
 - 운동 경기 전 워밍업 권고 및 페어플레이 교육, 구급함 제공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 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교외활동)** 총학생회,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학생 집단활동 안전**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학기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 대학생 집단행사 시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 사항 】

- 가.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비상대피로, 소화기 비치 등)
- 나.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다.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 라. 행사(계약) 전(前) 답사
- 마.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음주자제, 고압적 행위 금지 등)
- 바. 필요시 교직원 동행
- 사. 예산 집행 내역 공개
- 아. 집단연수 계획 수립에서 계획 시행까지 전 추진과정에 대해 인파밀집 상황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하되, 자체 점검 및 사전교육 조치
- 자.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교직원 등 안내자(인솔자)가 안내하도록 하고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 조치
- 차. 집단연수, 행사 운영 등의 과정에서 위험한 인파 속에서는 인파의 흐름에 따르면서 천천히 대각선으로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며 탈출로 찾기
- ※ 가장 가까운 출구, 모든 출구 위치 확인 필요

가.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 안전 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결과
 - 숙박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여부
-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
 -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 ※ 보험 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1인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 확인
 - 숙박과 관련된 계약서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영업 배상 책임보험은 물론 화재보험 가입기관과의 계약 권장
- 숙박시설 계약 시 미등록 숙박업소, 무허가건축물 이용 자제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검토
 - * 수련시설 안전정보: 학교안전정보센터(<http://www.schoolsafe.kr>)

나.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차량 보험증권 사본 및 차량보유 현황표
 - ※ 보험 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1인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 확인
 -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며, 행사 당일에는 배차된 차량이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조건으로 버스 차종 및 연식, 승차정원 등 안전에 필요한 조건을 적시
- 운전자 등 차량 안전 확인
 - 차량 계약 시 해당차량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확인 및 음주측정 실시 요청(관할 지방경찰청 교통관련 부서)

다.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 학교에서 기 가입한 보험 여부 및 보상(배상) 범위 등 확인
 - 기존에 대학에서 가입된 보험의 보상(배상) 적용 범위* 확인
 - * 사고 발생 시 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입학 전 신입생 등에 대해서도 보상(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보상범위가 사고건당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참가학생 규모에 따라 보상(배상) 규모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참가인원 대비 보상(배상) 규모 확인

-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 가입 검토
 - 여행자 보험, 기존 보험에 특약추가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라. 행사 전(前) 답사

- 보험가입 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재 확인
-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 ※ 소방시설, 완강기, 대피로, 인근 소방서, 병원, 지자체 등과의 연락 체계
-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 교직원(시설담당자)의 참여로 시설안전 확인 강화

마. 참가학생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포함)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실시
 - * 관련 부처 교육 및 교육자료 이용
- 행사장 도착 시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 ※ 숙소 및 행사장소 소화기 위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경로

바. 교직원 동행

- 대학 측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이거나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시 교직원이 동행

사. 예산 집행 내역 공개

-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행사 경비에 대해서는 회계 관리 내역을 공개하여 예산 집행관리 투명화

아. 기타

- 행사 전후 기상예보 상황 확인 후, 숙박버스 등의 계약에 대한 일정 연기, 취소 등 결정

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대학 측 주관하여 실시

- 입학 전에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하여 가급적 교내에서 실시
 - ※ 학생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학은 주관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처리 등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회 주관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금지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가급적 1일 내에 완료토록하고, 2일 이상 진행할 경우 대학 관계자(교수 또는 직원) 및 행사 주관 학생을 반드시 책임자로 지정하여 지도·감독을 강화
-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경비 중 숙박비 지원 지양

나.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고 발생 시 엄정히 대처

-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대처 및 재발 방지
 - ※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대학당국에서 주관하지 않고, 학생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비 등의 투명성 확보

- 법적 근거없는 오리엔테이션 비용의 징수를 금지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교예산으로 운영하여 공식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정착
- 학생회비를 총학생회가 집행할 경우, 학교의 회계 집행 규정을 준용토록 학칙에 규정하여 투명성 확보

라. 사전교육 실시 강화 등

- 학생 대상 행사시 행사를 기획·주관하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행사 전 반드시 음주,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진행 중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 성폭력(성희롱), 가혹(폭력)행위 등에 대한 예방 조치 강구
- 성교육 등 인권관련 내용을 가급적 교양과목으로 지정을 권장

마. 대학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대학생활 설계 및 적응을 지원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편성·운영
 - *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강신청, 장학금, 각종 복지혜택, 상담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학생회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바. 학생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대학생의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사항 기준을 적용하고, 교직원 동행 의무화

3

사안 발생 시 대처

- 1차 :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을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에 연락
- 2차 : 해당 지자체와 교육부 등에 사고 발생 상황 통보
 - ※ 교육부 비상연락처 : 044) 203-6293 (학교안전총괄과), 044) 203-6118 (당직실)
 - ※ 사고발생 보고: moel19@korea.kr

4

사고발생 후속조치(환류시스템)

- 현장 확인 및 대처
 - 학생 피해상황 파악, 보호자 연락, 응급처치, 소방서·경찰서 등 연계
- 사고발생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 팀원 → 팀장 → 처장 → 부총장 → 총장
 - 교내 관련부서 협조 요청
 - 교육부에 사고 발생 상황 통보
 - ※ 교육부 비상연락처 : 044) 203-6293 (학교안전총괄과),
044) 203-6118 (당직실)
 - ※ 사고발생 보고: moel19@korea.kr
- 원인 조사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보험 청구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심폐소생술 교육경비	2.7	2.8	2.8	8.3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49	55	64	168	
계	51.7	57.8	66.8	176.3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시설관리팀	팀장	김선규	02-2173-2191 / sunkyu@hufs.ac.kr	교내시설 주관부서
2	시설관리팀	팀원	항병륵	02-2173-2120 / spred1@hufs.ac.kr	
3	건설기획팀	팀장	김지호	02-2173-2695 / jhkim120@hufs.ac.kr	주변시설 주관부서
4	건설기획팀	팀원	강전길	02-2173-2697 / jeonkilkang@hufs.ac.kr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해당 사항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육시설 안전인증

- 2025년 : 8개동 인증취득 완료
- 2026년 : 7개동 인증취득 보완심사 중

○ 건축물

- 계절별 교육시설물 자체 안전점검 시행(연 3회)

○ 기계설비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시
- 특정사용 가스시설 정기검사 실시

○ 전기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연1회) 및 정밀점검(1회/3년) 시행
- 고/저압 전력설비 유지보수
- 승강기 매월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시행

○ 안전사고 발생으로 재산피해 또는 인명사고 발생시

- 인명피해 발생시 관련부서(보건실) 및 유관기관(119등) 협조요청
- 피해현황 파악 내부보고 및 교육부 보고(사고규모에 따라 결정)
- 피해시설 및 피해예상 시설물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 피해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교내·내외 건설공사 진행 시

-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에게 건설공사로 인한 교육시설과 이용자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요청
- 제출된 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검토 및 승인(교육시설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

○ 주변 공사장 안전점검

- 주변 공사장 안전울타리 상태 점검
- 공사차량 안전운행 여부 점검
- 주변 공사장 안전통행로 상태 점검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45	5	6	56	
기계/위생설비 유지보수 사업	161	917	766	1,844	
전기설비 유지보수 사업	110	115	218	443	
교육시설안전 인증	27	8	0	35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0	0	0	0	
계	343	1,045	990	2,378	

③ 연구실 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시설관리팀	팀장	김선규	02-2173-2191 / sunkyu@hufs.ac.kr	주관부서
2	시설관리팀	팀원	김현주	02-2173-2193 / hufshj@hufs.ac.kr	
3	교무행정팀	팀장	엄용국	02-2173-2102 / ykeom@hufs.ac.kr	협조부서
4	학사종합지원센터	팀장	김현숙	02-2173-2107 / wisesue@hufs.ac.kr	
5	학생지원팀	팀장	권윤기	02-2173-2131 / steve@hufs.ac.kr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연구실 내 콘센트 과열 등의 위험요인 등으로 인한 전기화재 발생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피해현황

※ 2025년부터 운영 시작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0	0.0
재산피해(백만원)	-	-	-	-	0	0.0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0	0.0
	부상	-	-	-	0	0.0
	계	-	-	-	-	0

□ 원인분석

○ 피해발생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1. 전기분야 사고

가. 전기화재

※ 사고상황 ☞ 많은 플러그가 꽂혀 있어 정격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멀티 콘센트의 과열(또는 단락, 스파크, 접촉불량, 누전 등)로 화재 발생

구 분	해당 연구실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담당 부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을 초과하는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 금지 ○ 전기기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 ○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 취득 전기제품 사용 금지 ○ 전열기 근처에 가연물 방치 금지 ○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필히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함이 있는 전기설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 ○ 연구실 내 추가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정격용량 확인 등 정격 용량 증감 요소 확인 및 조치 ○ 보호장치 등 안전설비에 대한 작동상태 주기적 점검
사고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전기기기의 전원을 신속히 차단 ○ 연기에 의한 피해자나 화재에 의한 화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 ○ 화재 발생 시 해당기기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 있으므로 물 분사 금지 ○ 소화기는 가능하면 C급 소화기 사용하여 초기 진화 ○ 필요 시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등)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주변 통제 구역 설정 ○ 사고 발생 지점 전기배선 상위단의 분전반 전원 차단 ○ 연기 질식 환자에 대비한 신선한 공기 확보 및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안정 ○ 전원 재투입 전에 접지 확보 및 각 기기별 절연진단을 실시하여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 화상 및 질식 전문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 조치
사고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2026년부터 운영 시작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연구실 안전점검	-	-	1	1	
안전교육	-	-	1	1	
안전설비 설치, 유지보수	-	-	0	0	
그 외(보험, 검진 등)	-	-	1	1	
계	-	-	3	3	

□ 원인분석

- 법정감염병, 제4급 감염병인 코로나-19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로 하향 및 격리 해제 조치 등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재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수칙 전파 및 교육이 필요함
-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각종 호흡기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 및 유행하므로 예방접종 교육과 각종 예방 지침 교육이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코로나-19 대학일상회복위원회 결정에 의거 학생 확진시 “유고결석결시규정” 제3조 유고사유와 인정기간 규정 적용 및 교직원 확진시 “휴가규정” 제4조 병가 규정 적용
- 안전보건관리팀 홈페이지를 통한 감염병 예방교육·홍보 실시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대학 내 위생 관련 조치를 통한 각종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 예방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염병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감염병 대국민 행동수칙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감염병 관련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감염병 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감염병 비상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감염병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진료·검사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 유행이 종료되어 복구 활동

- 평가 및 보완, 복구, 감시 활동 유지하고 수업결손 현황 보고 및 대책 수립(자체 휴업시)

- 심리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대학혁신지원사업	0	0	0	0	
코로나 확산방지 사업	0	0	0	0	
계	0	0	0	0	

4.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총괄지원팀	팀장	이명우	02-2173-2162, bright@hufs.ac.kr	주관부서
2	총괄지원팀	팀원	김동욱	02-2173-3525, gast3525@hufs.ac.kr	
3	인사팀	팀장	박식원	02-2173-2163, vision@hufs.ac.kr	협조부서
4	인사팀	팀원	박진홍	02-2173-2164, edpark@hufs.ac.kr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 건수	1	2	1	4	0	1.60
피해자 수	0	0	0	2	0	0.40

□ 원인분석

○ 교내 폭행 행위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음주사고 및 외부인 침입 사례 등의 일반 범죄가 항시 발생할 수 있어, 평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법의 도입과 방법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 시행 중,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함, 폭행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 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등 CEPTED 기법 적용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 관련 매뉴얼 : [별첨13]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 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협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② 대응 · 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 · 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 · 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 · 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부터 2일 이내 착수
 -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별첨13]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원상회복”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실질적 참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추진 정책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출권 강화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CCTV 교체	9	0	0	9	
통합경비용역 이용	397	404	425	1,226	
통합경비시스템 이용	59	58	61	178	
계	465	462	486	1,413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 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인권센터	센터장	장보은	02-2173-3252, bechang@hufs.ac.kr	주관 부서
2	인권센터	연구교수(글로벌)	심우영	031-330-4465, edward@hufs.ac.kr	
3	인권센터	상담연구원(글로벌)	이보경	031-330-4462, bububub26@hufs.ac.kr	
4	인권센터	상담연구원(서울)	함경희	02-2173-2559, sgfu117@hufs.ac.kr	
5	인권센터	행정담당(서울)	김문배	02-2173-2346, mbc@hufs.ac.kr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교원,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사건 양상이 복잡하고 노동권과 교육권의 권리침해가 동반될 수 있음
 - 선·후배 간, 동급생간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관계 내 존재하는 위계와 힘의 영향력 또는 친밀함으로 인해 공식적 문제 제기 어려울 수 있음
- **(성폭력 범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교제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행위당사자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학업과 진로에서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대학 전공 연구 분야 내 대인관계의 한정 및 학업과 진로에서도 오랜 기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사건발생 시 왜곡된 내용으로 소문이 확산되거나 문제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주변인들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

□ 피해현황 (양 캠퍼스 합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 건수	성희롱	2	3	6	2	14	5.40
	성폭력	3	3	6	0	4	3.20
	계	5	6	12	2	18	8.60
피해자 수	성희롱	4	8	6	2	13	6.60
	성폭력	5	3	6	0	1	3.00
	계	9	11	12	2	14	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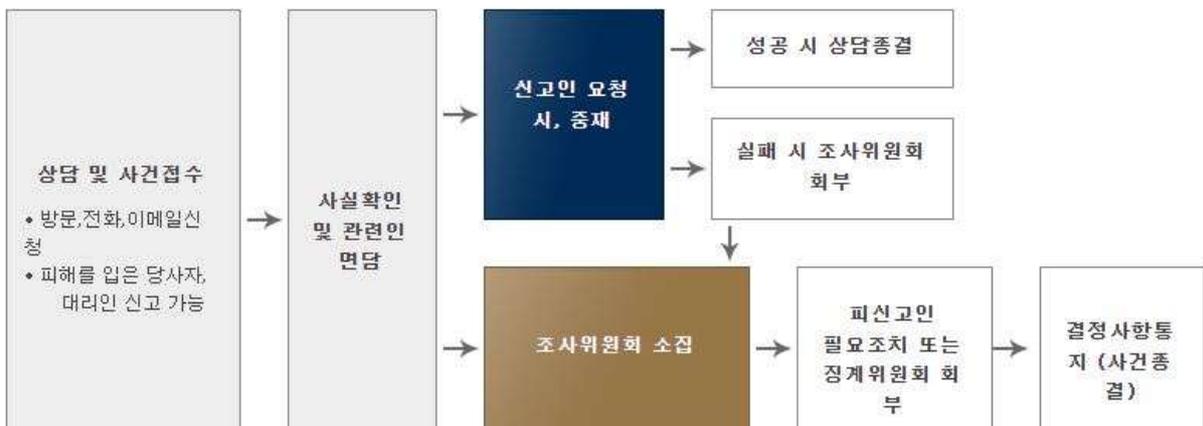
□ 원인분석

- 비접촉성 성폭력(불법촬영 등), 성희롱(SNS 등) 발생을 예의 주시할 필요성 추후, 폭력예방교육 시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의 비중을 늘릴 필요성 대두
- 학내 구성원 전체(교원, 직원, 학생)의 인권감수성 제고의 필요성
안전교육을 위한 게릴라식 방법(20분 교육) 외에 사건 발생 부서나 단위에 재발방지 교육 실시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구성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건처리 기반 조성
 - 안전한 근로환경 및 인권존중 조직문화 조성
 - 행위자 교육을 통한 성희롱 재발방지
 - 공공기관으로서 무관용 원칙 적용 필요성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건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안전한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적 기반조성
 -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통한 성폭력 예방
 - 성폭력 인식 및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성의식 수준 점검

- 1. 상담 및 사건 접수
 -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대리인 센터에 신고
 - 전문상담연구원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된 상담 진행
 - 내담자에게 전문상담연구원에서부터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심리적·법률적·의료적 지원 정보 제공
- 2. 사실확인 및 관련인 면담
 - 전문상담연구원이 상담을 통해 구체적 피해내용 및 신고인의 요구사항 등 파악
 - 피해내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전문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절차에 따라 조사(사실 확인을 위한 사건 관련자 면담 등)
- 3. 중재
 - 피해자의 의사 또는 인권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사건을 조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권센터와 연계한 중재와 조정(사과문, 재발방지서약,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징계,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원만한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
- 4. 인권심의위원회 소집
 -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재가 결렬된 경우, 심각하고 상습적인 피해로 인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권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 조사
 -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조사(사건관련자 희망 시, 참석 진술도 가능)
 - 인권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권자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피신고인에게 자체적인 임시조치 가능
 - 인권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
- 5. 사건해결을 위한 필요조치
 - 인권심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성희롱 등 피해가 인정될 경우, 피신고인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교육 이수명령, 사회봉사조치, 접근금지 명령, 수업 분리 등의 필요조치 부가
- 6. 결정사항 통지
 - 인권심의위원회 결정 및 조치 결과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



-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 보고
 3. 인권침해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사와 연구
 5.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6. 그밖에 대학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33조(인권교육)
 - ① 센터장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괴롭힘을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인권교육은 전문가 강의,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2. 성희롱 등 행위 관련 법령 및 지침
 3. 성희롱 등 행위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4. 성희롱 등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2차 피해 예방조치 등
 5. 성희롱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의 예방과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
 7. 기타 성희롱 등 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괴롭힘 예방과 관련 법령 및 지침,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등
 - ③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교무처, 행정지원처, 대학원 교학처, 학생·인재개발처, 국제교류처, 부속교육기관 사무처 등은 센터와 협력하여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 ④ 센터장은 매년 연간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해야 한다.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폭력예방교육사업	22.25	23.95	55.7	101.9	2023년부터 양 캠퍼스 인권센터 통합
상담사례 슈퍼비전 운영비	1.2	1.2	0.6	3	
성 강연회 운영비	7	7	4	18	
위기학생 응급지원비 사업	7	7	3	17	
계	37.45	39.15	63.3	139.9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안전보건관리팀	팀장	홍순혁	02-2173-2956, safety@hufs.ac.kr	주관부서
2	안전보건관리팀	팀원	박태수	02-2173-2119, safety@hufs.ac.kr	
3	인사혁신팀	팀장	박식원	02-2173-2163, vision@hufs.ac.kr	협조부서
4	시설관리팀	팀장	김선규	02-2173-2191, sunkyu@hufs.ac.kr	
5	총괄지원팀	팀장	이명우	02-2173-2162, bright@hufs.ac.kr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해당 사항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1.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가.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교육대상 및 시간>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정기교육	전체 근로자	반기 12시간	자체교육(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	안전보건 전문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채용 시, 교육 (직무배치 전)	일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자체교육(관리감독자)
	일주일 이상 한달 이하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일용 외 근로자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근로자	2시간	
특별안전교육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해당 근로자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6시간 이상 (최초작업 전 4시간 이상)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교육	대상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	

나. 업무절차

대상근로자 선정	교육방법 선정	교육 실시	서류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 • 관리감독자 • 신규 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집체, 온라인, 현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다. 용어정의

- 1) 정기교육 :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
- 2)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매년 일정 시간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는 정기교육
- 3) 채용 시 교육 : 모든 신규입사자에 대해 처음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
-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해당 작업 내경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시

2.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가.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나.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다. 업무절차

측정대상물질 확인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DS 확인 (작업환경 측정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작업환경대상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방법, 측정시간에 따라 측정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라. 용어정의

- 1)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
- 2) 예비조사 :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 사용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파악 및 측정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

마. 보건관리업체(창조산업보건서울센터) 점검 결과 작업 환경 측정 불요

- 1) 일부 화학제품에 대해서만 사용 대장 작성하여 간헐적 사용임을 증명할 것을 요청 받음

3.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가.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나.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애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 다. 업무절차

대상근로자 선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근로자 - (사무직) 1회/2년 - (사무직 외) 1회/1년 -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1회/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 기관에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 대상자 독려

라. 용어정의

- 1)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
- 2)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 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시설관리팀 해당)
- 3) 배치 전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해당 노출 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4.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가.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 나. 업무절차

재해유형 확인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 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 위험성 평가 • 수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다. 용어정의

-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2)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고규모별 보고절차>

◆ 경미한 사고

- 응급조치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사고
- (보고절차) 별도 신고의무 없으며, 기관자체 종결 처리

◆ 3일 이상 휴업재해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 휴업은 연속 3일 이상이어야 함
 -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이며, 휴무일·공휴일 포함
 - 휴업기간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판단
- (보고절차)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보고(팩스, 인터넷 등) 및 산재예방지도과에 공문 제출

◆ 중대재해

- 즉시 해당 작업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보고절차1) 다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전화, 팩스로 보고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보고절차2)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확인을 받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팩스, 인터넷 등) 및 산재예방지도과에 공문 제출

5.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가.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산업재해 통계 조사표〉

직종 구분	현업 근로자수	이상은 도접촉	넘어짐	절단 /베임	물체에 맞음	물체에 부딪힘	근골격 계질환	기타	소계
조리	0	0	0	0	0	0	0	0	0
시설	12	0	0	0	0	0	0	0	0
경비·통학보조	0	0	0	0	0	0	0	0	0
청소	0	0	0	0	0	0	0	0	0
그 외	0	0	0	0	0	0	0	0	0
합계	12	0	0	0	0	0	0	0	0

6. 안전시설 및 보호구

- 가.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나.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 다. 업무절차

대상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서류보존
•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작업 파악	⇒ • 작업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방법 교육	⇒ • 보호구 지급대상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7. 유해·위험 방지 활동

- 가. 위험성 평가
 - 1)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함
 - 2)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참고)
 - 3) 2026년 정기 위험성평가 예정

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1)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기 위험
- 2)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이며, 2023년 해당 평가 시행했고 2026년 시행 예정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산업안전관리 대행비	8.2	7.9	8.8	24.9	서울·글로벌 캠퍼스 통합
보건안전관리 대행비	7.7	8.5	9.3	25.5	
안전용품 구입비	3	2.7	3.0	8.7	
정기 위험성 평가	6.6	5.0	7.5	19.1	
계	25.5	24.1	28.6	78.2	

②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안전보건관리팀	팀장	홍순혁	02-2173-2956, safety@hufs.ac.kr	주관부서
2	안전보건관리팀	팀원	박태수	02-2173-2119, safety@hufs.ac.kr	
3	인사팀	팀장	박식원	02-2173-2163, vision@hufs.ac.kr	협조부서
4	시설관리팀	팀장	김선규	02-2173-2191, sunkyu@hufs.ac.kr	
5	총괄지원팀	팀장	이명우	02-2173-2162, bright@hufs.ac.kr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해당 사항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1.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가.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조직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뜻은 아니며,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

다.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등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성,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

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전보건관리팀 조직 완료(2022. 8)

2. 유해·위험요인 확인 후 업무절차 개선

가.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이 확인 개선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반기 1회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로 대체 가능 - 연 1회 실시

(※위험성 평가 :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3.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가.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호

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가.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가.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호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전문인력(안전·보건관리자)을 배치

<전문인력 배치 기준(겸임자에 대한 업무수행시간 포함)>

전문인력	역할	배치기준	비고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현업근로자 50인 이상~1,000인 미만(1명), 1,000인 이상(2명)	전담자(300인 이상)가 아닌 경우, 연 585시간 이상 업무 수행 단,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경우 100시간,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경우 200시간 추가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현업근로자 50인 이상~5,000인 미만(1명), 5,000인 이상(2명)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현업근로자 50인 이상(1명)	

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의 4항에 의거, 현업근로자가 50명 이하이므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외부업체에 위탁함

6. 종사자 의견 청취 후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가.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호

나.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안전신문고 시행,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 실시 중

7.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가.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호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해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7조(산업재해발생은 은폐금지 및 보고 등),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72조(산업재해기록 등),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개요〉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사고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 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수시 위험성 평가 수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8.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가.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나.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 등 법률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으므로 기관 임의의 기준과 절차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 또는 고려하여 업체 선정

- 1) 경쟁입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2)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산업안전관리 대행비	8.2	7.9	8.8	24.9	서울·글로벌 캠퍼스 통합
보건안전관리 대행비	7.7	8.5	9.3	25.5	
안전용품 구입비	3	2.7	3.0	8.7	
정기 위험성 평가	6.6	5.0	7.5	19.1	
계	25.5	24.1	28.6	78.2	

6. 기타

1] 비상사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예비군연대	연대장	심만수	02-2173-2512, sms10622@hufs.ac.kr	주관부서
2	예비군연대	참모	이성갑	02-2173-2513, 2024073@hufs.ac.kr	
3	예비군연대	사무원	이수경	02-2173-2514, lsk0804@hufs.ac.kr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 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총무실시계획 등 시행
 - 매년 총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 15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종합상황실 및 군사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 관련 매뉴얼 : [별첨18]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직장민방위 물자/장비 구매비	0.6	0.2	-	0.8	2025년까지 운영 (2026년부터 예산통합관리)
민방위훈련 준비비	0.1	0.26	-	0.36	
민방위훈련 준비 및 훈련후 후속조치비	0.1	0.35	-	0.45	
총무계획 작성준비 및 후속조치비	0	0.3	-	0.3	
비상대비(민방위, 총무) 훈련 준비비 및 후속조치비 (구매비 포함)	-	-	1.11	1.11	2026년 예산항목 신설 (2026년부터 예산통합관리)
계	0.8	1.11	1.11	3.02	

※ 중·단기 소요 예산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6	2027	2028	합계	
민방위 장비 교체	0.3	0.1	0.1	0.5	소화기, 민방위 소모성 물자(배터리 등)
민방위 물자 교체	0.3	0.1	0.1	0.5	
계	0.6	0.2	0.2	1.0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공통	대학	아카데미종합보험	아카데미종합보험 교육시설공제
연구실		연구실 안전공제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 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 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아카데미 종합보험 (현대해상)	2022-03-19 2023-03-19	3.3	15,000	49,066	-	-	1	3,635	서울/글로벌 통합
2024	아카데미 종합보험 (현대해상)	2023-03-19 2024-03-19	3.1	15,000	46,612	11	32,257	-	-	서울/글로벌 통합
2025	아카데미 종합보험 (현대해상)	2024-03-19 2025-03-19	3.3	15,000	49,053	30	32,420	1	3,571	서울/글로벌 통합
2026	아카데미 종합보험 (현대해상)	2025-03-19 2026-03-19	3.6	15,000	53,708	23	35,544	-	-	서울/글로벌 통합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학교시설	대인	300,000	1,5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3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치료비	5,000	5,000	
	사망·후유장해	300,000	-	
신입생(OT) 등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치료비	5,000	5,000	
	사망·후유장해	300,000	-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교육시설공제	2023-01-01 2023-12-31	26,301	175,339	37,069	-	-	-	-	서울캠퍼스
2024	교육시설공제	2024-01-01 2024-12-31	26,301	175,339	38,569	-	-	-	-	서울캠퍼스
2025	교육시설공제	2025-01-01 2025-12-31	26,247	174,978	38,975	-	-	-	-	서울캠퍼스
2026	교육시설공제	2026-01-01 2026-12-31	32,672	178,539	50,437	-	-	-	-	서울캠퍼스

□ 보상한도

(단위 : 천원)

담보대상	대인		대물	보상한도(가입금액)	비고
	인당	사고당	사고당		
건물				382,164,066	25개 건물
시설물소유자배상책임	300,000	300,000	1,000,000		
물품				41,032,675	도서
부속물(공작물)				2,266,255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2026학년도 신규가입, 2026년 4월부터 운영 예정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보상한도

※2026학년도 신규가입, 2026년 4월부터 운영 예정

공제가입금액	담보대상	보상한도(천원)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시설관리팀	팀장	김선규	02-2173-2191 / sunkyu@hufs.ac.kr	주관부서
2	시설관리팀	팀원	김재환	02-2173-2196 / woghks0221@hufs.ac.kr	
3	학사운영팀	팀장	이재선	02-2173-2215 / ljs@hufs.ac.kr	
4	학생지원팀	팀장	권윤기	02-2173-2131 / steve@hufs.ac.kr	
5	글로벌홀	담당	유홍립	02-6235-2862 / waida08@hufs.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기숙사(글로벌비움) 화재대피 훈련	2025.04.03	19:00~19:30	514명	-
	2025.09.29	19:00~19:30	495명	-
기숙사(글로벌홀) 화재대피 훈련	2025.04.02	18:30~19:30	231명	-
	2025.10.01	18:30~19:30	264명	-
소방관련 훈련/교육	2025.05.19	14:00~16:00	136명	-
	2025.09.25	14:00~16:00	76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기숙사 야간 화재대피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2회, 기숙사 입주자를 대상으로 야간 화재대피훈련 실시완료
소방 관련 훈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축제기간 소방훈련 부스 운영(소화기 사용실습) 연 1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대문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 실시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기숙사 화재대피 훈련	2026년 3월	미정	미정	-
	2026년 9월	미정	미정	-
동대문소방서 소방교육	2026년 10월	미정	미정	
소방기 사용훈련	2026년 5월	미정	미정	-
	2026년 10월	미정	미정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기숙사 야간 화재대피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2회, 기숙사 입주자를 대상으로 야간 화재대피훈련 실시
소방 관련 훈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축제기간 소방훈련 부스 운영(소화기 사용실습) 연 1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대문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 실시

2. 학생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 ■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보건관리팀	팀장	홍순혁	02-2173-2956, safety@hufs.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보건관리팀	팀원	김혜정	02-2173-2139, hufshealth@hufs.ac.kr	
외부기관	대한국민 응급처치협회	강사	김수성	02-962-7799, kingkim@hanmail.net	협조기관
외부기관	동대문 보건소	주무관	서희원	02-2127-5454, shw702@ddm.go.kr	

□ 2025년 교육 · 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백만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매월 1회 운영 총 12회 실시	매회 2시간	316	2.8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캠퍼스 내 구성원들의 응급상황대비,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응급상황 발생시 상황대비 처리 능력 향상 교육)

□ 2026년 교육 · 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백만원)
심폐소생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매월 1회 · 교직원-방학중 2회 	2시간	회당 30명	2.8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캠퍼스 내 구성원들의 응급상황대비,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응급상황 발생시 상황대비 처리 능력 향상 교육)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안전보건관리팀	팀장	홍순혁	02-2173-2956, safety@hufs.ac.kr	주관부서
2	안전보건관리팀	팀원	박태수	02-2173-2119, safety@hufs.ac.kr	

□ 2025년 교육 · 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명	교육시간	인원	예산(백만원)
교직원	관리감독자 교육	16H	4	1.3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매년 일정 시간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집체교육을 통해 실시

□ 2026년 교육 · 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명	교육시간	인원	예산(백만원)
교직원	관리감독자 교육	16H	3	1.3
	정기교육	반기별 6H	12	자체 교육
	특별안전교육	16H	취급 물질 변동시 해당 물질 취급 인원 집계하여 진행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2H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관리감독자 교육	집체교육으로 연내 시행
정기교육 / 특별안전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관리감독자가 해당 근로자 대상 시행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시설관리팀	팀장	김선규	02-2173-2191 / sunkyu@hufs.ac.kr	주관부서
2	시설관리팀	팀원	김현주	02-2173-2193 / hufshj@hufs.ac.kr	
3	교무행정팀	팀장	엄용국	02-2173-2102 / ykeom@hufs.ac.kr	협조부서
4	학사종합지원센터	팀장	김현숙	02-2173-2107 / wisesue@hufs.ac.kr	
5	학생지원팀	팀장	권윤기	02-2173-2131 / steve@hufs.ac.kr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명)	예산(백만원)
신규교육훈련	집체교육	1	신입생	1.0
정기교육훈련	온라인교육	2	재학생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안전교육 실시
정기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안전교육 실시

5. 성범죄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인권센터	센터장	장보은	02-2173-3252, bechang@hufs.ac.kr	주관 부서
2	인권센터	연구교수(글로벌)	심우영	031-330-4465, edward@hufs.ac.kr	
3	인권센터	상담연구원(글로벌)	이보경	031-330-4462, bubbub26@hufs.ac.kr	
4	인권센터	상담연구원(서울)	함경희	02-2173-2559, sgful17@hufs.ac.kr	
5	인권센터	행정담당(서울)	김문배	02-2173-2346, mbc@hufs.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백만원)
학생	연중	2시간	21,288	526.7
교직원	연중	4시간	2,040	

○ 추진개요

-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모든 구성원에게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 2022년에는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하여 대면교육에 대한 장애요인이 존재하였으나 대다수 구성원이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이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높은 교육이수율을 보였으며, 이는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 개선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동력으로 작동하였음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대학은 모든 구성원에게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 예비교사, 외교관, 법조인 등 예비공무원 성인지정책 담당자 대상으로 성인지교육 병행 시행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백만원)
학생	집합대면교육 사이버교육	연중 실시 총학생회 임원 등	20,000	20.3
교직원	집합대면교육 사이버교육	연중실시 고위직 교원 대상 등	2,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6.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부속기관	예비군연대	연대장	심만수	02-2173-2512, sms10622@hufs.ac.kr	주관 부서
		참모	이성갑	02-2173-2513, 2024073@hufs.ac.kr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홍보실	전략홍보팀	팀원	김재영	02-2173-2095, k jy@hufs.ac.kr	협조 부서
국제교류처	외국인학생지원센터	팀원	이지원	02-2173-2859, john@hufs.ac.kr	
교무처	학사종합지원센터	팀원	유병호	02-2173-2118, ybh01@hufs.ac.kr	
직속기관	비서실	팀원	오승현	02-2173-2003, risingsun@hufs.ac.kr	
행정지원처	총괄지원팀	팀원	구원희	02-2173-2024, unseenworld@hufs.ac.kr	
		팀원	김정호	02-2173-2168, gast2168@hufs.ac.kr	
	재무회계팀	팀원	김경렬	02-2173-2186, kimkl@hufs.ac.kr	
	건설기획팀	팀원	강전길	02-2173-2696, jeonkilkang@hufs.ac.kr	
	시설관리팀	팀원	김재환	02-2173-2196, woghkso221@hufs.ac.kr	
정보처	정보전략팀	팀원	김창현	02-2173-2178, chkim@hufs.ac.kr	
		팀원	박종훈	02-2173-2751, jhp2592@hufs.ac.kr	
국제교류처	국제입학팀	팀원	안시우	02-2173-3437, siwoo.ahn@hufs.ac.kr	
		팀원	기원일	02-2173-2065, wonilki85@hufs.ac.kr	
대학원 교학처	대학원사무2팀	팀원	한상윤	02-2173-2429, turbo@hufs.ac.kr	
		팀원	지현구	02-2173-2103, hyunguji@hufs.ac.kr	
입학처	입학팀	팀원	이원영	02-2173-2128, wygom@hufs.ac.kr	
도서관	학술정보팀	팀원	권남도	02-2173-2485, namdo@hufs.ac.kr	
사업지원처	사업본부운영팀	팀원	이준희	02-2173-2262, harry3206@hufs.ac.kr	
위 이외에 교수 1명					

□ 2025년 교육 · 훈련 결과

○ 직장 민방위대 훈련 : 대원 17명

- 훈련 전 민방위대원 13시 집합 : 사전교육 및 임무별 훈련장소 배치 완료
- 전국 동시 대피훈련 시(14:00~14:20) 임무수행 실제훈련 실시 완료
- 훈련 종료 후(14:20~15:00) 비상시 행동요령 등 민방위교육 별도 실시 완료

○ 공습 대비 주민 대피훈련 : 행정지원팀 + 민방위대원 17명

-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방송시스템 등을 통해 교내 경보 전파
- 본관 지하2층을 통해 중앙방재실로 신속 대피
- 대피 후 대피소에서 민방위훈련 안내방송 청취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백만원)
직장 민방위대 교육 (교직원)	3. 28(목)	4H	19	0.6
	3. 29(목)	3H		
직장 민방위대 훈련 (행정지원팀+교직원)	8. 20(수)	2H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상대비 업무 /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비 업무(대학 총무실시계획 작성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 ▪ 비상대비 민방위 훈련(행정안전부 지정 사이버교육)

□ 2026년 교육 · 훈련 계획

- 훈련 전 민방위대원 13시 집합 : 사전교육 및 임무별 훈련장소 배치
- 전국 동시 대피훈련 시(14:00~14:20) 임무수행 실제훈련 실시
- 훈련 종료 후(14:20~15:00) 비상시 행동요령 등 민방위교육 별도 실시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백만원)
교직원	비상대비 업무 교육	1	16	0.81
교직원	직장 민방위대 훈련	1	25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상대비 업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비 업무(대학 총무실시계획 작성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 ▪ 비상대비 민방위 훈련
직장 민방위대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 상황 발생시 임무 및 반별 행동요령 숙달 ▪ 민방위 장비 및 물자 작동 요령 숙지

8.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 ■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원	학생상담센터	연구원	양지수	02-2173-3321	캠페인 주관 (동대문구보건소 협업)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마약예방캠페인	아웃리치	1회	118	2,237,33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마약예방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위험성 알리기 ▪ 마약류 부작용 체험 ▪ 마약 반응 검사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마약예방캠페인	아웃리치	1	150	2,50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마약예방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위험성 알리기 ▪ 마약류를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 관련 캠페인 기획 <p>*서울시(동대문구보건소)와 협업 예정</p>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교육부	044-203-6657	교육안전정책과
동대문소방서	119(02-6942-1202)	화재,진압,구조
서울삼육병원	1577-3675/02-2210-3566	응급대응기관
동대문구청	02-2127-5000	재난관리기관
동대문경찰서	02-961-8738/02-961-4324	치안,통제/민원
중앙119 구조본부	02-6942-1274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대표번호
경희의료원	02-958-8114	응급의료센터
동대문보건소	02-2127-5397	감염병팀장
에스코	1544-3131	
한국전력	02-970-4265(동대문중앙지사)	
서울시 상하수도	02-3146-2600(동부수도사업소)	
명신화이어이엔지	02-406-3119(김종석)	
현대엘리베이터	1577-0603	
오티스엘리베이터	02-2007-5800	

2) 상황실 운영 시

구분	전화번호	비고
통합상황실	02-2173-2424	본관 1층
통합상황실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02-2173-2161	

□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교육부	044-203-6657	교육안전정책과
동대문소방서	119(02-6942-1202)	화재,진압,구조
서울삼육병원	1577-3675/02-2210-3566	응급대응기관
동대문구청	02-2127-5000	재난관리기관
동대문경찰서	02-961-8738/02-961-4324	치안,통제/민원
중앙119 구조본부	02-6942-1274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대표번호
경희의료원	02-958-8114	응급의료센터
동대문보건소	02-2127-5397	감염병팀장
에스코	1544-3131	
한국전력	02-970-4265(동대문중량지사)	
서울시 상하수도	02-3146-2600(동부수도사업소)	
명신화이어이엔지	02-406-3119(김종석)	
현대엘리베이터	1577-0603	
오티스엘리베이터	02-2007-5800	

2) 상황실 운영 시

구분	전화번호	비고
통합상황실	02-2173-2424	본관 1층
통합상황실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02-2173-2161	

□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질병관리본부	1339		
교육부	044-203-6932	moe04@korea.kr	대학운영지원과
동대문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127-5400	고갑석	보건행정과장
	02-2127-5376	위지영	감염병관리

※ 동대문구 보건소 인사이동 또는 부서 개편에 따라 담당자 변경 가능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감염병 분야)	02-2173-2139	hufshealth@hufs.ac.kr	

□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이문 지구대	02-961-4309		
해바라기센터	02-3422-4101	sbsunflower@naver.com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통합상황실	02-2173-2424	에스원 상황실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동대문 소방서	02-6942-1202	대표번호
중앙119 구조본부	02-6942-1274	
동대문 경찰서	02-961-4324	민원실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대표번호
삼육서울병원	1577-3675/02-2210-3566	응급의료센터
경희의료원	02-958-8114	응급의료센터
동대문구 보건소	02-2127-5400	보건행정과장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통합상황실	02-2173-2424	본관 1층
통합상황실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02-2173-2161	

□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국방부	1577-9090	www.mnd.go.kr	팩스 02-748-6895
제56사단(동원처)	02-380-6775	.	팩스 02-371-2113
제221여단 3대대	031-595-7923	.	동원과
서울시 민방위운영팀	02-975-5315	www.seoul.go.kr	팩스 02-2133-4902
동대문구 민방위팀	02-2127-4384	www.ddm.go.kr	안전재난과
이문1동대	02-964-9113	.	동대상황실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대학 종합상황실 및 군사상황실	02-2173-2513 02-2173-2514	yebigun@hufs.ac.kr	예비군연대

VI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협조하여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3.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 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형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4.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학생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